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적용의 한계

1. 사실관계

K는 원고 K1, K2의 조부인바, K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을 원고들이 발행주식의 17.1%, 17.5%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B회사에게 증여하였고, B회사는 증여 받은 이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위 주식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B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삼아 그 주식이 치상승분을 원고들이 K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점들에서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K의 B회사에 대한 주식의 증여는 손익거래로서, 원고들이 얻은 주식가치의 상승이라는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혹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하에서도 위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② 상증세법 제41조는 결손법인과 같은 특정법인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회사는 결손법인이 아닐 뿐 아니라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이므로 위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B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완전포괄주의만을 근거로 삼아 B회사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상증세법이 설정한 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5. 10. 15.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법리를 받아들여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써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쟁점 및 의의

2003년 상증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위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있는 이후, 상증세법 제33조부터 41조까지의 여러 가지 유형에 관한 개별적인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는 예시적인 성격의 규정이라고 설명되어 왔고, 따라서 특정 행위가 그 예시된 규정의 과세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현행 상증세법상의 증여세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예시규정으로 설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적인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들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밝힌 선례가 되는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이민현 변호사 | TEL. 02 316 1639 | E-Mail. mhylee@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